

■ 심사 규정

1. 투고원고의 게재 여부는 편집국이 의뢰한 3인의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서 편집국에서 결정한다.
2. 편집국으로부터 위촉받은 심사위원은 심사의 결과, 논문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투고자에게 보완 및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편집국은 학회지 간행 규정에 따라 원고의 형식과 체제, 그리고 내용에 대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편집국이 원고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한 후 투고자가 2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않으면 게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원고를 게재불가로 처리할 수 있다.
4. 논문 심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5. 논문 심사의 결과는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로 구분하며 심사에 대한 종합판정은 다음과 같다.

심사 A	심사 B	심사 C	종합판정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 1) 게재가: 편집국의 검토 후 게재할 수 있다.
- 2) 수정후 게재가: 심사수정 사항에 의거하여 수정하고, 편집국은 이를 확인 후 게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심사수정 사항을 따르지 않거나 2주 안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편집국이 기존 게재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3) 수정후 재심사: 심사 논문에 대해 재심사가 필요하다. 판정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후에 재심사 절차를 수행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최종 게재 여부는 편집국에서 판단한다. 재심사에서 '수정후 재심사'로 판정되면 게재불가로 처리할 수 있다.

- 4) 게재불가: 논문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불충분하여 당호에는 논문 게재가 불가하다.
6. 투고된 논문의 심사자가 연구윤리위반 행위에 대해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고 그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규정 개정) [개정 2019.12.12.]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2일 편집위원회 의결 및 승인을 통해 전면 개정되었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